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0. 6.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00년 5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6.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

가. 제안이유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에 따른 진천군 소유재산과 충청북도 공유(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환대상 도유지 : 2필지 5,680㎡

소 재 지	지 목	교환면적	개별공시지가	재산평정가격
계	**2필지**	**5,680㎡**		**34,080천원**
진천, 진천,장관 269	답	3,770㎡	6,000원	22,620천원
〃 271	답	1,910㎡	6,000원	11,460천원

○ 교환대상 진천군유지 : 2필지 4,618㎡

소 재 지	지 목	교환면적	개별공시지가	재산평정가격
계	**2필지**	**4,618㎡**		**33,885천원**
진천, 진천,장관산8-1	임야	4,066㎡	7,560원	30,739천원
〃 6-3	전	552㎡	5,700원	3,146천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예정부지인 도유재산은 2필지에 약 1,721평으로써 재산평가 가격은 3천 408만원이며
교환하고자 하는 진천군 소유 군유재산은 2필지에 약 1,400평의 재산평가 가격은 3천 388만 5천원으로 차액이 19만 5천원임.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 예정부지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1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2000. 4. 19)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90

제출년월일 : 2000.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 신축에 따른 진천군 소유재산과 충청북도 공유(잡종)재산의 상호교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교환

○ 교환취득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교환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재산평정가격(천원)
계	2필지	4,618	4,618		33,885
진천, 진천, 장관 산8-1	임야	4,066	4,066	7,560	30,739
〃 6-3	전	552	552	5,700	3,146

○ 교환처분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교환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재산평정가격(천원)
계	2필지	5,680	5,680		34,080
진천, 진천, 장관 269	답	3,770	3,770	6,000	22,620
〃 271	답	1,910	1,910	6,000	11,460

※ 필지별 공시지가 : '99. 1. 1 기준

3. 예산사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의 취득	재산의 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공유재산의 상호교환			33,885	34,080	토 지

※ 재산의 교환·처분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정가격이며 교환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

4.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 『별 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509,090	31,564,372	2	4,618	33,885	5	513,708	31,598,257
		건물	1	3,316	2,699,224				1	3,316	2,699,224
		기타									
	매입	토지	3	509,090	31,564,372				3	509,090	31,564,372
		건물	1	3,316	2,699,224				1	3,316	2,699,224
		기타									
	교환	토지				2	4,618	33,885	2	4,618	33,885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2	5,680	34,080	2	5,680	34,080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5,680	34,080	2	5,680	34,080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구분	재산표시 지목	재산표시 소재지	재산표시 지적	교환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2건		처분			5,680	5,680	34,080			
2건		취득			4,618	4,618	33,885			
계	토지	처분	답 (2필)	진천군	5,680	5,680	34,080	2000년 하반기	증평소방서 진천 파출소 부지확보	진천군수
		취득	임야,전 (2필)	진천군	4,618	4,618	33,885	2000년 하반기	증평소방서 진천 파출소 부지확보	진천군수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성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